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. 12. 4 선고 2024가단6987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2. 4.

주 문

-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1)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2024. 1. 29.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소외 D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24. 7. 22. 접수 제 36414호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고상교

별지

1) B 지분 2분의1 중 일부 $1/4$ (=8분의 1), C 지분 2분의1 중 일부 $1/4$ (=8분의 1)로 선택함.